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74
----------	------

발의년월일 : 2017. 4. 3.

발 의 자 : 주미희 의원 등 9명

## 1. 개정이유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가 가능토록 철거 기준을 완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안 별표 5]
  - 2단 단순승강 및 2단 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기준을 완화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5.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6.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7.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기간 : 2017. 3. 23. ~ 3. 28.)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별표 5]</p> <p>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p> <p>가. 2단 경사피트식  나. 2단 경사승강식  다. 2단 단순승강식</p>	<p>[별표 5]</p> <p>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p> <p>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p> <p>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p>

#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보상금의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